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1994. 12. 24.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11. 29
- 다. 회부일자 : 94. 11. 29
- 라. 상정일자 : 94. 12. 22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 : 청소과장 이남용)

가. 제안사유

오수·분뇨 및 축산물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중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분뇨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 영업허가 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붙임으로써 대행업체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재 영업허가시 불필요한 허가기간을 삭제하여 대민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안 제10조)
 - 현행 : 분뇨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 허가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야 한다.
 - 개정 : 재 영업허가에 따른 많은 불편 및 행정적인 소모로 허가기간을 삭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허 면)

가. 검토과정

- 제출연월일 : 94년 11월 29일
- 제출자 : 달서구청장(청소과소관)
- 검토기간 : 94년 12월 16일 ~ 12월 19일

나. 관련근거법령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다. 검토의견

- 본 조례는 분뇨영업 허가시 허가조건으로 영업구역 및 허가기간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이 93년 12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분뇨영업을 허가할때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여건에 따라 허가조건을 적의 조정·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행정행위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요지

- 현재 오수분뇨 관련 영업허가시 영업구역, 영업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구역, 허가기간이 삭제되면 주민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불편초래시 제재는 어떻게 하는가?
- 현재 분뇨는 달서위생에서 오수는 경북정화, 일성위생에서 대행하고 있고 영업허가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중 일부개정되어 현행 수거대행업자가 재영업허가시 불필요한 허가기간을 삭제하여 대민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민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불편초래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벌칙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시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함.
- 93년 12월 27일 관보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법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7개 구청중 제일 먼저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개정후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48
----------	-------

제출년월일 : 94. 11.

제 출 자 :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청 소 과)

1. 제안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중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분뇨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 영업허가 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붙임으로써 대행업체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재 영업허가시 불필요한 허가기간을 삭제하여 대민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제4항

3. 주요골자

- 분뇨관련영업의 허가(안 제10조)
 - 현행 : 분뇨관련영업 허가시 영업구역, 허가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야 한다.
 - 개정 : 재 영업허가에 따른 많은 불편 및 행정적인 소모로 허가기간을 삭제함.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안) : 따로 붙임

6. 기타참고사항 : 따로 붙임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분뇨관련영업의허가) ① (생략)	제10조(분뇨관련영업의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영업구역 : 달서구관할(동)			
2. 허가기한 : 2년(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기 타 참 고 사 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분뇨관련영업) ①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나 정화조의 청소를 업(이하“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같다.

②~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 구역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⑥ 생략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4-47
----------	-------

제출년월일 : 94. 11. .

제 출 자 : 대구직할시달서구청장

(청 소 과)

1. 제안이유

-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음.
-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함.
-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3.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안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제4조)
-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 (안제5조, 제6조, 제10조)
-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안제12조)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안제14조, 제15조)
- 일정 시설기준·전담관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등의 여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제16조)
-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제18조)

4. 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기타사항(공중화장실과 관련된 관계법령 발체) : 따로 붙임